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304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6년 8월 12일
- 라.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2. 제안이유

- G밸리 종합발전계획 발표 및 온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재생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산업단지 관련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신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제명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 (안 제명)
- 나. 분양사업의 적정이윤율, 건축사업의 적정이윤율 및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도로율, 산업시설용지의 입주우선순위 선정 등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신설함 (안 제9조)
- 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한 서면심의 근거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2항)
- 라. 산업단지(G밸리, 온수산업단지)에 기반시설 등 조성·확충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 신설 (안 제19조)
- 마. 창업지원, 기술개발지원, 산학협력, 판로개척 지원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안 제20조)
-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의거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을 15%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토록 하여, 적정이윤율을 10%로 규정함 (안 제21조)
-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 의거 산업단지 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을 15%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적정

이윤율을 10% 로 규정함 (안 제22조)

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제2항에 의거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도로율 등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한 녹지율·도로율의 5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안 제23조)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일반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일정비율 입주 우선순위 선정방법 규정 (안 제24조)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의 규정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지원 및 산업단지 관련 법령 위임 사항을 추가하여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나. 서울시의 산업단지와 관련 사업 현황

- 산업단지란 산업시설과 교육·연구·지원 등의 관련 시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의료·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의미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 산업단지의 종류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 시·도지사 등이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농공단지’(農工團地), 지식·문화·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의 육성·개발을 위하여 조성지역에 지정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음.

<전국의 산업단지 지정 현황>(‘13년말 기준)¹⁾

	단지수 (개)	지정면적 (km ²)	입주업체 (개사)	가동업체 (개사)	고용 (천명)	생산 (조원)	수출 (백만달러)
국가	41	793,561	49,545	45,505	1,155	674	268,876
일반	528	507,148	24,331	21,266	706	309	148,932
도시첨단	11	2,272	224	174	2	0.2	3
농공	453	72,828	6,447	5,683	148	49	11,843
계	1,033	1,375,809	80,547	72,628	2,011	1,032	429,655

- 서울시에선 현재 국가산업단지 1개소와 일반산업단지 2개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엔

1) 통계로 본 한국의 산업단지 10년(2003~2013),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니어링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동구에 일반산업단지의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의 산업단지 현황>(‘14년말 기준)²⁾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마곡일반산업단지	서울은수산업단지
종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위치	1단지 : 구로구 구로동 2·3단지 : 금천구 가산동	강서구 가양동 292답 일원	서울시 구로구 은수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
구성목적 및 특성	60년대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섬유, 봉제산업 위주의 산업단 지였으나, 최근에는 고부가 가 치 첨단산업, 정보지식형 산업 의 유치, 대기업연구소, 벤처기 업 등이 입주하고 있으며, 한 국산업단지공단의 벤처센터 건 립(2000)을 필두로 첨단 도시 형 산업단지로 급속히 변모하 고 있음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 하여 R&D 및 신기술 산업의 인큐베이터로 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음	도심의 기계공장을 집 단화, 협동화, 전문화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에 도움이 되는 산업 단지 조성
입주 유치업종	첨단기술산업, 지식산업, 정 보통신산업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	전 제조업
사업 시행자	한국수출산업공단	SH공사	서울은수산업단지관리 공단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서울은수산업단지관리 공단
구성기간	1965년 ~ 1974년	2008.12 ~ 2016.12	1970.4. ~ 1971.11.
면적	1,922,000㎡	1,111,000㎡	160,000㎡
	산업시설구역 1,446,000㎡ 지원시설구역 188,000㎡ 공공시설구역 288,000㎡	산업시설구역 730,000㎡ 지원시설구역 81,000㎡ 공공시설구역 211,000㎡ 녹지구역 77,000㎡ 기타 12,000㎡	산업시설구역 125,000㎡ 지원시설구역 1,000㎡ 공공시설구역 34,000㎡
입주업체	9,790개사	35개사	162개사
가동업체	8,191개사	96개사(컨소시엄 기준 35개사) 입주계약 완료. -실 입주 6개사(16년8 월 현재)	161개사
고용인원	162,656명	6개사	2,010명
생산	170,513억원	자료없음(향후 조사 예정)	1,118억원
수출	3,934백만불	자료없음(향후 조사 예정)	10백만불

2) 2015 한국산업단지총람,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편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한 ‘2015년도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에 온수산업단지가 선정되어(‘15년 7월) 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디지털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G밸리 飛上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총 사업비가 1,168억원(국비 110, 지방비 110, 민간투자 948)으로 인프라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기반을 마련하고 앵커시설의 건립과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고도화된 제조업 특화단지로 육성할 계획임.
 - 종전에 530억원(시비 395억, 구비 27억, 국비 65억, 민간 43억)이 투입된 G밸리 飛上 프로젝트를(‘13~‘15)를 통하여 국가산업단지인 디지털산업단지에 기업지원시설, 도로교통, 녹지·보육시설 등을 확충하였고 현재는 기존의 사업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한 G밸리 종합발전계획(2015~2018)을 추진하고 있음.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개정안의 목적과 개요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그리고 지원에 대한 일반적인 자치법규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과 법령 위임 사항 등을 추가하고 제명도 이에 맞게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임.
- 본 개정안은 4장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제2장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제3장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4장은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와 전부개정조례안의 비교>

< 현행 조례 >	< 전부개정 조례 >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기능, 구성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기능, 구성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입주기업 지원 및 사업 등의 위탁근거 •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율, 건축사업의 분양수의 산정시 이윤율, 입주우선순위(위임사항) • 재생사업지구 도로율 및 녹지율(위임사항)

(2) 총칙(안 제1조에서 제2조)

- 안 제1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본 개정안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개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제도와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종전에 산업단지 지정신청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의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시행하여 소요기간과 비용의 단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조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와 일반단지 등의 조성·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시장이 지정·승인·협의를 조정하는 산업단지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 하단에서는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처럼 산업단지에 대한 개별 조례가 있는 경우에 해당 조례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입주자 유치와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음.

(3)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안 제3조에서 제7조)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 및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개정안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는 바,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 센터에 관한 규정 중에서도 핵심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 조례에도 센터의 기능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법령에서는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에 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에 조례안에서는 센터의 운영을 비상설로 규정하고 있어(안 제5조 제1항) 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토교통부(산업입지과)의 해석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상설 기관이지만 독자적인 조직이나 공간없이 담당과에서 기능을 대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타 시·도의 경우에도 대부분 별도의 센터 설치없이 담당부서에서 기능을 대행하고 있음.

(4)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안 제8조에서 제18조)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일반산업단지 등과

관련하여 산업단지계획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 그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일부 사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 및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법령의 규정>

안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의 각 호 사항	관련 법령의 해당 규정
1.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호
2.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2호
3. 산업입지법 제3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승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9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0호
4.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이윤율의 결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2호 및 40조의3 제2항
5. 제23조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및 도로율 등 결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
6. 제24조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 받는 대상자 선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안 제10조에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과 위원의 자격 및 분야별 최소 구성 인원 등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자와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관련 법령(제6조 제2항)에 따른 것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② 중앙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명
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명
3.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3명
4. 법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2명

- 안 제11조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며 임기 중 사임 등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임기를 계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회의 개최와 의사 정족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경우,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출석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4조는 위원의 제척과 기피 및 회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척사유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의 사유와 별도로 3개의 사유를 추가로 각 호에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안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제척사유는 아래 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각 호의 사유와 중복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불필요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과 시행령의 제척사유 규정 비교>

개정안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
1.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용역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안 제15조 위원의 해임 규정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것이며, 안 제16조 간사와 서기, 안 17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안 제18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에 해당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제4조의4(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5)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19조에서 제20조)

- 안 제19조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들을 비롯한 산업단지 내·외의 기반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의 조성과 확충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음
 - 노후거점산업단지는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에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산업단지를 의미함(「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 현재 서울시는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에 G밸리 종합발전계획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개선, 판로개척, 인력 양성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쟁력강화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온수 산업단지도 재생사업을 위한 지구계획의 수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여러 지원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이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또한 안 제20조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이에 대한 사무의 위임·위탁을 규정한 것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들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있는 민간에 위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6) 관련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안 제21조에서 제23조)

① 분양가격의 적정이윤율(안 제21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 조성원가에서 적정이윤을 합한 가격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이윤율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이 적용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조성원가의 산정 등) ⑥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정이윤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의 경우에는 건축원가를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율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이윤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자본비용
2. 「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 안 제21조는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율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와 국토해양부의 지침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 제26조를 따른 것이며 적정이윤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타 시·도의 분양가격 적정이윤율 현황>

- 100분의 9(1) : 경남
- 100분의 10(12)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100분의 11(1) : 충북
- 100분의 14(1) : 대전
- 미제정(1) : 제주

- 이와 같이 적정이윤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이익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이 결정되므로 해당 산업단지의 위치, 분양시점의 부동산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적정이윤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게 되고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참여가 낮아지게 됨.
- 따라서 동 개정안과 같이 적정이윤율을 10%로 하고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분양가격결정시 적정이윤율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음.

- 【서울시 적정이윤율 전문가 설문조사(서울연구원)】**
- ▶ 조사기간 : 2015. 5. 28. ~ 6. 28.
 - ▶ 설문대상 : 산업단지 개발 및 재생 관련 전문가 143명(최종응답 82명)
 - ▶ 이윤율
 - 적정이윤율 : 10% (응답자 중 49%)
 - 최소이윤율 : 6% (응답자 중 57%)
 - 최대이윤율 : 15% (응답자 중 55%)
 - ▶ 주요 의견
 - 적정이윤율의 상승이 민간 투자에 실질적이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상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전망
 - 주요 참고지표는 민간투자 및 부동산사업의 개발이윤율 등
 - 산업단지 적정이윤율 결정시에는 산업단지 분양가격, 위치 등을 고려

② 건축사업 분양수익의 적정이윤율(안 제22조)

- 한편, 건축사업의 분양수익 산정시 적정이윤율에 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에서는 산업단지 개발 중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윤을 차감하여 산정토록 하면서 적정이윤을 건축원가 100분의 15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이하 이 조에서 "분양수익"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윤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안 제22조는 적정이윤율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윤율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타 시·도의 건축사업 분양수의 적정이윤율 현황>

- 100분의 9(1) : 경남
- 100분의 10(9)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100분의 12(1) : 충북
- 100분의 13(1) : 강원
- 100분의 14(1) : 대전
- 기타(1) : 경기
- 미제정(2) : 세종, 제주

- 이 같이 안 제21조와 제22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윤율을 원칙적으로 정하고 지나치게 현실과 맞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윤율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또는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③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과 도로율(안 제23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사업지구의 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의 규모에 따른 녹지율과 도로율 등의 기준³⁾을 시·도 조례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②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상 기준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재생사업지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산업단지 규모별 녹지비율과 도로비율(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구분	산업단지 규모	계획기준
녹지율	300만㎡ 이상	10% 이상~13% 미만
	100만㎡ 이상~300㎡미만	7.5% 이상 ~ 10% 미만
	100만㎡ 미만	5% 이상 ~ 10% 미만
도로율	100만㎡ 이상	10% 이상
	100만㎡ 미만	8% 이상

<타 시·도의 재생사업지구 녹지율·도로율 현황>

- 100분의 50초과(3) : 부산, 대구, 경북
- 100분의 70(1) : 충남
- 100분의 51~75(1) : 대전
- 100분의 51~80(1) : 인천
- 100분의 55~80(1) : 전북
- 기타(3) : 전남, 강원, 경남
- 미제정(6) :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제주

○ 재생사업지구에서 녹지율과 도로율의 축소는 환경파괴와 재생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라는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④ 산업시설용지의 우선입주자 선정(안 제24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에서는 산업시설용지의 우선입주자를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산업단지는 10%, 그 외 산업단지는 30%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입주 우선순위와 선정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개발토지·시설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자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3. 삭제 <2008.9.25>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5. 재생계획에 의하여 이전이 요구되는 자
6.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전이 요구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9.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려는 자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10
2.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100분의 30

○ 이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의 특성, 서울시의 전략산업, 일자리 창출효과와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규정으로 보임.

라. 공청회 개최 결과

<공청회 개요>

- 일시/장소 : '16.11.25(금) 14:00 /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회의실
- 참석인원 : 8명(서면제출 포함)
 - 서울시(서울시의회) : **김태희** 경제정책과장, **한정훈** G밸리활성화팀장, **이미진** 산업기반팀장, **주우철**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 외부전문가 : **김목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정호**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
- ※ 서면의견 제출 : **문중현** 서울산업진흥원 기업성장본부장

- 서울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하여 2016년 11월 25일에 서울시 담당자와 외부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공청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규정의 상위법 상충 여부, 적정이윤율 규정, 비용추계서의 누락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공청회 개최 결과는 참고자료 2 참조)
 - 서울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추가 제출하였음.

<공청회 결과 요약>

- 개정(안) 제5조(지원센터의 구성)에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한다」로 되어 있으나, 제3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에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한 대로 규정하고 있어 상호간에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5조 수정필요
- 개정(안)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조성·확충으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추계서 필요함.
- 적정이윤율 규정은 타시도가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함이 합리적임

마. 종합의견

-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이 활발한 타 시·도와 달리 서울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개발사업 등에 대한 규제와 제한으로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에 여의치 않아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간 명목상의 법규에 불과하였음.
 -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위촉이 된 적이 없었음.
- 하지만 서울디지털단지의 G밸리 종합발전계획과 온수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을 비롯하여 강동구에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취지와 목적은 타당함.
- 다만 일부의 규정들이 상위법의 규정에 맞지 않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거나 표현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일부 수정이 불가피함.

- 지원센터의 비상설 운영 규정(안 제5조 제1항)과 위원의 제척 사유로 제14조 제1항의 제1호에서 제3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공청회에서 지원센터의 비상설 운영 규정이 상위법의 상설 운영 규정과 상충된다고 지적되었음.
-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적정이윤율의 상한선을 100분의 15로 제한하고 있으나 하향 조정만을 허용하고 있는 강원도 등 타 시·도와 달리 본 개정안에서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적정이윤율 결정 범위에 제한이 없어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하고 있음.
 - 공청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 제21조와 제22조에서 적정이윤율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본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산업단지의 지정·개발·변경 등에 서울시의 산업단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비롯하여 적정이윤율과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도로율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어 위원의 위촉 시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 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조정 지원
3.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⑧ **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명
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명
3.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3명
4. 법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2명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②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

라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율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율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 산업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40조제9항 관련)

조성원가항목	내역
용지비	용지매입비·지장물 등 보상비·조사비·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용지부담금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조성비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기반시설 설치비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직접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판매비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되, 일반관리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공사에 관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자본비용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비고: 그 밖의 조성원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이하 이 조에서 "분양수익"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율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율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안에서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
- 2.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의 분양가격의 인하
- ④ 삭제

제42조의3(개발토지·시설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 및 임대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처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기준·자격요건 및 대상자 선정방법등 주요내용을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자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3. 삭제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5. 재생계획에 의하여 이전이 요구되는 자
6.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전이 요구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관할구역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9.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려는 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거나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한 경우
3. 국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거나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

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 촉진이 필요한 경우

나. 해당 지역에 특정산업의 집적화가 필요한 경우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10

2.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100분의 30

⑥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8.9.25.>

⑦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 이내에 당해 산업단지관리권자 및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노후거점산단법)

제2조(정의)

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하 "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관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자원기술의 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2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산업단지 내에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이 위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8)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추진
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
용안정 및 취업 촉진사업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
조의3,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
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의 활용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협력 촉진에 대한 지원
-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
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
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
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
- 2)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주택공급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주택
구입자금등의 융자,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3)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
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 2)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
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마.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
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

지는 제외한다)·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

가. 산업단지규모별 녹지비율

구분	산업단지 규모	계획기준
녹지율	300만㎡ 이상	10% 이상~13% 미만
	100만㎡ 이상~300만㎡ 미만	7.5% 이상~10% 미만
	100만㎡ 미만	5% 이상~7.5% 미만

2. 산업단지의 도로확보기준

가. 산업단지규모별 도로면적비율

구분	산업단지 규모	계획기준
도로율	100만㎡ 이상	10% 이상
	100만㎡ 미만	8% 이상

제26조(조성원가의 산정 등) ⑥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정 이윤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의 경우에는 건축원가를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율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이윤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자본비용

2. 「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참고자료 2〉

산업단지 조례 전부개정관련 공청회 개최결과

I | 공청회 개요

■ 개최개요

- 일시/장소 : '16.11.25(금) 14:00~16:10 /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회의실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안) 전문가 의견청취
 - 참석인원 : 8명(서면제출 포함)
 - 서울시(서울시의회) : **김태희** 경제정책과장, **한정훈** G밸리활성화팀장, **이미진** 산업기반팀장, **주우철**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 외부전문가 :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정호**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
- ※ 서면의견 제출 : **문중현** 서울산업진흥원 기업성장본부장

II | 개최결과

< 결과요약 >

- 개정(안) 제5조(지원센터의 구성)에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한다」로 되어 있으나, 제3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에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호간에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5조 수정필요
- 개정(안)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조성·확충으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추계서 필요함.
 - G밸리는 이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경우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비용추계서 추가 필요함
- 적정이윤율 규정은 타시도가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함이 합리적임

■ 조례 전부개정안 안건설명

- **이미진 산업기반팀장**
 - G밸리 종합발전 계획 발표 및 온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재생단지로 선정

됨에 따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산업단지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 주요 개정내용 설명

(분양사업의 적정이윤율(10%), 건축사업의 적정이윤율(10%),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도로율, 산업단지(G밸리, 온수산업단지)에 기반시설 등 조성·확충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규정 신설,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근거 규정 마련, 재생사업지구 녹지율 및 도로율 등)

■ 전문가 주요 의견

○ 김목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 산업단지 적정이윤율 산정을 위해 전문 자문위원이 추천한 산업단지 개발 및 재생관련 담당자 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적정이윤율로 10%이내의 이윤율로 정하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함
- 2015. 6월 현재 타시도 적정이윤율 사례 조사결과, 13개 시도가 적정이윤율이 포함된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입법예고를 개정중이었으며, 일반적으로 10% 수준의 적정이윤율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조례안에서 적정이윤율은 10%범위내로 정하여 융통성을 부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박정호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조례안의 제5조에는 지원센터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한다로 되어 있음
- 따라서, 제5조의 규정은 제3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의 센터설치 강제규정 혹은 상위법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

- 타시도의 경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내용과 상위법 위임사항을 이미 조례로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위탁내용을 조례로 구체화시킨 본 조례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이윤율의 경우 10%로 단정하는 조항을 10%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문종현 서울산업진흥원 기업성장본부장(서면)

- 조례전부개정안은 향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함
- 산업집적법 및 산단절차간소화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

으로 규제가 아닌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례라 판단됨

■ 서울시(서울시의회) 의견

○ 김태희 경제정책과장

- 조례 전부개정안이 산업단지(G밸리, 온수산업단지)에 기반시설 등 조성·확충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되어 있음
- 물론 조례개정안이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이 목적이고, G밸리는 이미 방침 등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추진되는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추진 비용추계서(5년)는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우철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 비용추계서는 앞으로의 5년간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를 작성하는 것임
- 이번 상정 안건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한정훈 G밸리활성화팀장

- G밸리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조례에 지원근거는 없었지만 방침 등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나, 향후에는 법적 지원근거 마련으로 G밸리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IV | 향후계획

■ 공청회 개최결과 의회 제출	'16.11.
■ 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	'16.1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1.
■ 개정 조례 공포·시행	'17. 1.